

(붙임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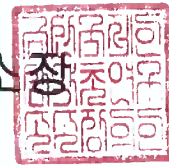
(재)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공고 제 2020 - 70호

(재)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시험검사원 채용 공고

금산군의 인삼·약초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12.4.

(재)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



1 연구소 소개

(재)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중앙과 지방정부(충남도, 금산군)가 지역특화작목인 인삼과 약초의 산업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'R&BD사업화 전문연구기관'입니다.

우리연구소는 '고려인삼의 메카' 금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삼과 약초관련 산업체와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 및 제품개발 등 다양한 연구와 기술사업화의 임무를 띠고 있으며,

건강기능성 소재의 원료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인증 업무와 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서비스를 통하여 고려인삼의 명품화 및 이미지 제고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지역 전통시장과 소공인 업체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하는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Home Page : <http://www.ginherb.re.kr>

2 채용계획

1. 채용인원

부서	직급	예정업무	인원	기타
검사인증부	시험검사원	° 잔류농약 검사	1	- 이력서 작성 시 지원직무 필수 작성
		° 이화학 검사 (중금속 등)	2	

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

2. 자격 요건

○ 농산물관질관리법 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) 관련

-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- ② 식품기술사, 식품기사, 식품산업기사, 농화학기술사, 농화학 기사, 위생사, 토양 환경기사, 수산양식 기사, 수질 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
- ③ 기타의 자는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

○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 제3항 관련)

- ①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검사업무 1년 이상 종사자
-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검사업무 6개월 이상 종사자
- ③ 대학 관련학과 졸업

* 관련학과: 농/수/축산 학과, 식품, 미생물 및 화학 관련학과

* 관련자격증: 식품기술사, 식품기사, 식품산업기사, 수산제조기사, 수산제조산업기사, 위생사, 위생시험사 등 검사업무 관련 자격증

3. 근무 조건

- 신 분: 시험검사원
- 근무시간: 주 5일 근무
- 보수 및 복지
 - 연구소 보수 규정에 의함
 - 4대보험 가입, 출장비, 구내식당, 동호회 운영 등

4. 채용일정

- 공고 및 접수기간: 2020. 12. 04 ~ 12. 13(10일간)
 - 접수방법: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우편, 방문접수, 이메일 등(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)
 - 접수장소: (재)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검사인증부(1층)
 - 접수문의: E-mail jykwak@ginherb.re.kr, ☎ 041-750-1633
- 채용: 2021년 1월

5. 제출서류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
-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, 경력증명서, 기술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
(최종합격자에 한함)
- 주민등록 초본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
- 연구소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한 배치전 건강검진 진단결과서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

6. 응시자 주의사항

〈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 임용(채용)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. 〉

- 연구소 직원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. (단,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)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

지 아니한 자
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6의2. 법률에서 연구소 직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자
 7.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
 8. 기타 연구소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
 9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10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「병역법」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-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 자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배치전 건강검진진단 결과 부적합 자

○ 채용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하며, 응시자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제출서류 위·변조 발견시 당연 취소되며 향후 응시자격 박탈

○ 본 직원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(<http://www.ginherb.re.kr>)에 재공고합니다.

○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 공고와 관련된 질의응답 중 전화,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 답변 등은 효력이 없고, 서면 답변한 공문만 효력이 있으며, 시스템 입력 내용보다 공고문이 우선하며, 공고문의 내용은 우리 연구소에서 해석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(재)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검사인증부 ☎ 041-750-1633

7. 서류 심사 기준

응시번호	직무내용	지원자격	적격여부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잔류농약 검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학, 원예학, 식품공학, 바이오화학, 생명/환경공학 전공자 ■ 식품기술사, 식품기사, 식품산업기사, 농화학기술사, 농화학 기사, 위생사, 토양 환경기사, 수산양식 기사, 수질 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■ 공인검사기관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화학검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련학과: 농/수/축산 식품관련학과, 화학, 미생물 전공 -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검사업무 1년이상 종사자 - 전문학사 졸업 후 검사업무 6개월 이상 종사자 - 학사 이상 ■ 식품기술사, 식품기사, 식품산업기사, 수산제조기사, 수산제조산업기사, 위생사 등 검사업무 관련 자격증 		

(붙임 2)

채용 직무기술서

채용분야	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
NCS 분류 체계	시험검사원	99.미개발	99.미개발	99.미개발	99.식품성분분석
직업기초능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직업윤리,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자원관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대인관계능력 			

주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운영 ■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운영
전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류전형 → 면접전형 → 합격자 발표 → 결격사유 조회 → 채용

직 무 설 명		
시 험 검 사 원	핵심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분석장비를 활용한 식품/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및 적부 판정 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 대행(공무수행)
	직무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분석장비 및 시료 전처리 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농산물 유해물질 및 영양성분 분석 ■ 식품 및 농산물 분석결과 정리 및 성적서 작성
	필요 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품 및 농산물의 부분별 분석장비 운용, 관리, 교육, 검정 및 표준화
	필요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분석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 사후관리 및 운영 기술 ■ 성분별 전처리 및 분석 유효성 검증 기술
	직무 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책임감 있는 태도,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■ 객관적인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 태도, 고객 지향적인 사고 ■ 데이터 특성 및 분석기술, 업무규정 준수, 연구원 내 융화적인 태도 등 ■ 긍정적 사고 및 적극적 협업태도
	필요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 제3항 관련) ■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) 관련

